#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4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정청래·진성준·강선우

이수진 · 임오경 · 박성준

장경태 · 소병훈 · 이원욱

송재호 · 전용기 · 이병훈

윤미향 · 송영길 의원

(14인)

#### 제안이유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57.5%가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임.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중장기 정책수립을 통해 일관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틀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장기 교육개 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 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함(안 제1조).
- 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교육혁신, 교육복지, 입시제도, 교육과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사립학교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심의·의결함(안 제2조).
- 다.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포함하여야 함(안 제3조).
-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거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시 등에는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안 제4조).
-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 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안 제6조 및 제7조).

- 사.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음(안 제8조).
- 아. 위원회는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함(안 제15조).
- 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안 제18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교육혁신, 교육복지, 입시제도, 교육과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사립학교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

층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교육부차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 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교육·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 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6.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 7. 그 밖의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⑤ 그 밖에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 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제7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모든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 다.
  -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의 수 ·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필

- 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 공 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 ·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위원·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하다.

###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5조(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국가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교육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 5.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에 관한 사항
- 6.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7.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교육감 등이 요청하는 자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10년 단위로 제15조 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발전계획을 국회에 보고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

- 석·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제17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제15조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 1. 대통령, 국회, 중앙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14일이내에 그 진행여부를 요청기관 등에 알려야 하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육부장관 등과의 관계)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 및 제15조의 사무의 주요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발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교육부장관 등에 게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